



형사/교통법원 부과금 면제 신청서에 대한 명령서 (쿡 카운티용)

일리노이 주, 순회법원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 주민 또는 기소 지자체 또는 지방정부 부처,
원고

대

피고/피진정인: _____
피고인. 이름 중간 이름 성

사건 번호

귀하의 이름(신청인): _____
이름 중간 이름 성



이 서식의 확인란에 체크 표시하거나 공간에 더 이상 내용을 기입하지 마십시오. 서식의 나머지 부분은 판사가 작성합니다.

법원에서 검토한 형사/교통법원 부과금 면제 신청서(Application for Waiver of Criminal and/or Traffic Court Assessments)에 대한 명령(1, 2, 3, 4 중에 체크 표시):

1. 인정 - 형사법원 부과금 전액 면제

형사법원 부과금 전체와 관련, 형사/교통법원 부과금 면제 신청 인정(신청서 최초 제출일부터 적용). 신청인은 형사법원 부과금 전체에 대한 전액(100%) 면제 자격이 있음. 근거 사유(A, B, C 중에 선택):

A. 신청인은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에서 소득 기준 공적 부조를 받고 있음.

- SSI(보충 연금소득(소셜 시큐리티 제외))
- AABD(노인, 맹인, 장애인을 위한 보조)
- TANF(빈곤가정 임시보조)
- SNAP(푸드 스탬프)
- 일반 보조(GA), 전환 지원, 주 아동 및 가족 지원

- 또는 -

B. 신청인의 개인 소득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현행 빈곤선의 200% 이하**에 속하며, 신청인은 [735 ILCS 5/12-901](#), [735 ILCS 5/12-1001](#) 에 따른 비면제자산에 비취 볼 때 부과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

- 또는 -

C. 부과금을 납부할 경우 신청인이나 가족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일리노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은 서식으로, 모든 일리노이 순회법원에서 영문 서식을 사용해야 함.
서식은 ilcourts.info/forms 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인정 - 형사법원 부과금 일부 면제

형사법원 부과금 관련, 형사/교통법원 부과금 면제 신청 인정(신청서 최초 제출일부터 적용). 법원 발견사항(1개 항목에 체크 표시):

- 형사법원 부과금 전체의 **75%**가 면제됩니다. 신청인은 가처분소득이 현행 빈곤선의 200% 초과, 250% 이하이므로 부과금 전액의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 형사법원 부과금 전체의 **50%**가 면제됩니다. 신청인은 가처분소득이 현행 빈곤선의 250% 초과, 300% 이하이므로 부과금 전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 형사법원 부과금 전체의 **25%**가 면제됩니다. 신청인은 가처분소득이 현행 빈곤선의 300% 초과, 400% 이하이므로 부과금 전액의 **75%**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파악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현행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은 [735 ILCS 5/12-901](#), [735 ILCS 5/12-1001](#)에 따른 비면제자산에 비취 볼 때 부과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납부(1 개 항목에 체크 표시):

부과금 납부 기일: _____
월, 일, 년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납부 가능(연기 사유, 분납 계획, 기타 합당한 조건에 관해 설명할 것):

3. 인정 - 교통법원 부과금 일부 면제

섹션 3은 부칙 2, 6, 9, 10, 13호에 따른 **교통법원 부과금**에 적용됩니다.

교통법원 부과금 관련, 형사/교통법원 부과금 면제 신청 인정(신청서 최초 제출일부터 적용). 법원 발견사항(1개 항목에 체크 표시):

- A. 신청인은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에서 소득 기준 공적 부조를 받고 있음 (**50% 면제**):
 - SSI(보충 연금소득(소셜 시큐리티 제외))
 - AABD(노인, 맹인, 장애인을 위한 보조)
 - TANF(빈곤가정 임시보조)
 - SNAP(푸드 스탬프)
 - 일반 보조(GA), 전환 지원, 주 아동 및 가족 지원

- 또는 -

- B. 부과금을 납부할 경우 신청인이나 가족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50% 면제**).

- 또는 -

c. 일부 면제 대상:

- 형사법원 부과금 전체의 **50%**가 면제됩니다. 신청인은 가처분소득이 현행 빈곤선의 200% 초과이므로 부과금 전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 형사법원 부과금 전체의 **37.5%**가 면제됩니다. 신청인은 가처분소득이 현행 빈곤선의 200% 초과, 250% 이하이므로 부과금 전액의 **6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 형사법원 부과금 전체의 **25%**가 면제됩니다. 신청인은 가처분소득이 현행 빈곤선의 250% 초과, 300% 이하이므로 부과금 전액의 **75%**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 형사법원 부과금 전체의 **12.5%**가 면제됩니다. 신청인은 가처분소득이 현행 빈곤선의 300% 초과, 400% 이하이므로 부과금 전액의 **87.5%**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파악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현행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은 [735 ILCS 5/12-901](#), [735 ILCS 5/12-1001](#)에 따른 비면제자산에 비취 볼 때 부과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납부 (1 개 항목에 체크 표시):

부과금 납부 기일: _____
월, 일, 년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납부 가능(연기 사유, 분납 계획, 기타 합당한 조건에 관해 설명할 것):

4. 계속 -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음

법원이 신청서의 해당 섹션이 불완전하게 작성되었거나 신청인의 면제 자격에 관한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이 대면 심리를 요청하거나 심리일자에 법원에 출석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인에게 미비 사항을 통지하고 신청서를 수정 작성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대법원 규칙 [45](#)에 따라 원격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해당 섹션이 불완전하게 작성되었거나 신청서 전면에 명기된 신청인 형사법원 부과금 면제 자격에 대한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격 여부를 따지는 구체적인 질문:
